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42호

『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5호)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3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기준을 개선하여 하청생산의 방지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9조

3. 주요내용

-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발급기준 신설(제18조) 및 제 6조의 임차공장, 제 7조의 격벽 등의 용어 정의 명확화
- 각 제품별 세부 기준의 적용조문 및 용어 통일
- 업종별 생산시설별로 임차가능 여부 명기
- 전기사용료 기준 통일(기본료 포함 단일기준 적용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(☎ 042-481-8918)

* e-mail : sangk99@smba.go.kr

4. 기타사항 :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공청회, 간담회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